

#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40,855,469	16,225,664
일반회계	529,387,380	15,881,621
특별회계	11,468,089	344,043
기타특별회계	11,468,089	344,043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191,461	35,744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303,162	39,095
건축진흥특별회계	255,600	7,668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467,795	14,034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40,720	4,222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89,815	2,694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1,410	2,142
드림빌특별회계	2,094,151	62,825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334,288	40,02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19,687	135,59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37,33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 (간주예산)